

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(제14조의2제2항 관련)

구분		규모
공공시설	공원사무소	부지면적 2,000제곱미터 이하
	매표소	부지면적 100제곱미터 이하
	탐방안내소	부지면적 4,000제곱미터 이하
보호 및 안전시설	대피소	부지면적 2,000제곱미터 이하
	대피소 외의 시설	별도의 규모 제한 없음
휴양 및 편의시설	야영장	부지면적 6,000제곱미터 이하
	휴게소	부지면적 1,000제곱미터 이하
	전망대	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
	야생동물관찰대	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
	공중화장실	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
교통·운송시설	도로	2차로 이하, 폭 12미터 이하(일방통행방식의 지하차도 및 터널은 편도 2차로 이하, 폭 12미터 이하로 하며 구난·대피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)
	탐방로	폭 3미터 이하, 차량 통과구간은 폭 5미터 이하
	교량	폭 12미터 이하
	궤도 (삭도는 제외한다)	2킬로미터 이하, 50명용 이하
	삭도	5킬로미터 이하, 50명용 이하
	선착장	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
	헬기장	부지면적 400제곱미터 이하
공원사업	공원구역에서 기존시설의 이전·철거·개수	

비고: 교통·운송시설 중 탐방로(국립공원의 탐방로만 해당한다)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.